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13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654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8. 1. 16.
판 결 선 고	2018.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440,350원 및 농어촌특별세 631,5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13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4.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 총 발행주식의 60%인 6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4. 12. 1.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총 발행주식의 20%인 20,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이 사건 회사 총 발행주식의 80%인 80,000주로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을 증가된 주식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취득세 과세대상의 장부가액(부동산 1,342,851,060원, 차량 9,158,661원)에 소유주식의 증가비율인 2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7,440,350원, 농어촌특별세 631,560원 합계 8,071,91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1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13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12. 1. C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양수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C 명의를 차용하여 인수한 쟁점 주식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2014. 12. 1. 쟁점 주식을 새롭게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등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 지방세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13

(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의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13

나. 판단

1) 위 법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쟁점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쟁점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람이 원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4. 12. 1. 쟁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쟁점 주식이 C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와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체결 경위,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고,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등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원고와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② 원고가 제출한 명의신탁주식확인서(갑 제11호증)는 그 작성일이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시점이 아닌 쟁점 주식의 이전일 무렵인 2014. 12.경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이 '쟁점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확인하며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취지로 간략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명의신탁주식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원고와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매수한 공장부지인 [redacted]도 [redacted]시 D 토지 등에 관한 계약금 1억 5,000만 원(2011. 3. 21. 원고가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이다) 중 5,000만 원을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최초 발행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13

식 10만 주의 주금 전액(5,000만 원 = 10만 주 × 1주당 500원)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1. 3. 30. 우리은행으로부터 5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1. 3. 31. 2차례에 걸쳐 1억 원,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011. 3. 31.부터 2011. 7. 25.까지 위 토지 등의 매도인인 E에게 4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회사가 2012. 3. 29.경 원고의 위 5억 6,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여 위 5억 6,000만 원이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유동성 장기부채로 반영된 점(을 제2호증),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는 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은 결국 이 사건 회사가 그 채무를 인수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토지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초 발행주식 10만 주의 주금 전액인 5,000만 원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또한 원고가 C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C이 쟁점 주식의 명의수탁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기록상 원고가 실질적으로 쟁점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가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13

재판장 판사 당우증

판사 신혜원

판사 이창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13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